



교육감 규정

번호: A-412

제목: 학교 내 안전

항목: 학생

발행: 2023년 12월 21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6년 11월 8일 자 A-412를 대체합니다.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명확한 내용 전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I

- 학부모 정의에 A-101와 교차 참조 내용 포함. (I.A.1)
- 교직원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 및 비-교직 교육청(DOE)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I.A.3)
-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 대한 기대를 확장합니다. (I.A.2)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SSA들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에 책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I.A.3)
- 학교 밖의 행동이 학교 관련 사건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명확히 합니다.
- 학부모 통지 요건과 관련하여 학생이 안전상의 염려를 표명하는 경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I.A.6)
- 모든 교직원이 본 규정 상의 요건을 숙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학교장에게 적용합니다. (I.A.7)
- SSA의 역할 및 SSA와 협력하고 이들을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해야 할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I.B) 교육청, 뉴욕시 및 NYPD 간의 양해 각서를 칭함. (I.B.1)
- 양해각서 하이퍼링크 및 해당되는 순찰 지침 절차 하이퍼링크 추가(I.B.1)
- SSA가 비-범죄 사건에 관한 학교 안전 사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하였습니다.
- SSA의 직무에 방문객 통제, 순찰, 비상시 대응, 학생 몸수색, 금속 탐지/스캐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I.B.4)
- SSA를 비-범죄 행위, 학생의 사소한 위반 등에 호출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중재를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I.B.5)
- 교육청 교직원이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학생의 비-범죄, 사소한 위반행위 목록을 추가하였습니다. (I.B.5)
- 학교 회의 관련하여 제안된 제 3 문단을 삭제하고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 번호를 재정렬 하였습니다.
- 학교 건물에는 (1) 비상 시 대응을 위한 수업일 BRT를 시행할 것, (2) 방과 후 BRT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경우 교육청 후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CBO와 협력한 비상대응

훈련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BRT 필수 구성원을 지정하였습니다.
(I.C)

섹션 II

- 범죄 사건에 “혐의”란 용어를 추가하여 이러한 사건이 신고, 통보 또는 NYPD 연락, 학생이나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문 당시에는 진술된 내용일 뿐이란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III 및 전반)
- 신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즉각 의료처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 밟아야 할 단계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여기에는 911 전화, 학부모 연락, 학부모가 학생의 후송을 원치 않을 때 대처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II.A, D)
- 학교장/대리인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가야 하며, 사건 당사자가 학생일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II.B)

섹션 III

- 공중 보건 및/또는 안전관련 영향이 있거나 알려야 할만한 비-범죄 또는 의료 사건 발생 시 EIC 연락 요건을 명시하도록 관련 용어를 업데이트(III.A) 하였습니다.
- 모든 학교 관련 사건에는 OORS 이 공식 사건 보고 시스템이란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III.B.1)
- 모든 학교 관련 사건 시 OORS 리포트 제출 요건을 정하고 설명하였으며, OORS 리포트에 포함해야 할 것과 사건 코드 요청 및 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III.B.2)
- 이제는 OORS 리포트의 일부가 된 종합 부상 리포트 작성 요건을 명시한 각주를 삭제하였습니다.
-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기밀 관련 질문 및 비밀유지 정보가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III)
- 학교장/지명자가 응급 정보 센터(NYPD를 불렀거나 이들이 학교로 출동하였을 때, 또는 기타 OSYD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EIC 업무시간 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III.A.1, 3)
- OORS 사건 보고를 시작함에 있어 EIC의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III.A.2)
- 증인 진술 제출 요건을 포함하였습니다. (III.B.3)

섹션 IV

- 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NYPD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때, 학부모 및 수퍼인텐던트 외에도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연락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IV.A.1)
- 학생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NYPD에 신고하였을 때, EIC에도 통보할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IV.A.1)
- 학교장 및 NYPD에 신고해야 하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IV.A.1)
- 어떤 행위가 NYPD에 신고해야 하는 범죄인지 학교장이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시니어 현장 자문(Senior Field Counsel)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IV.A.1.b)
- 학생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NYPD에 신고하였을 때, EIC에도 통보할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IV.A.1)

-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NYPD 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안전상의 위협이란 용어를 안전 비상상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학생의 비-범죄 위반행위 발생 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IV.A.2). 학생의 비-범죄 위반행위의 경우,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IV.A.2.b)
- 학생의 비-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훈육조치로서 911 을 출동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IV.A.2)
- 교육청 학생이 연루된 범죄 행위나 성적 비행과 관련된 신고 의무는 학교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교육청 학생과의 성적 비행에 가담한 성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경우 SCI 에게 연락하되, 학교장/대리인이 직접 혐의를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IV.B.1)
- 교육청 직원 및 학교에서 일하는 비-교육청 직원에 의한 기타 비행 발생 시 처리 절차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IV.B.2)

섹션 V

- 즉각적인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체포되기 전, 해당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관할 경찰서 슈퍼바이저 및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V.A) 즉각적인 위험이 있어 즉시 체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러한 연락을 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학교와 무관한 범죄에 연루되어 학생이 체포될 경우 가능하면 캠퍼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표현 대신 캠퍼스 밖 체포를 선호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캠퍼스 내 체포가 요구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보로 안전 디렉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V.C)
- 학생의 체포는 가능한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12 세 미만 학생에게는 가능하면, 혹은 SSD 의 승인 없이는 금속 수갑을 사용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필요한 제지만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V.E)

섹션 VI

- 학교 관련 범죄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NYPD/조사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VI.B)
- 신문 시 학부모가 동석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신문을 연기해야 하며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신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VI.B.1)
- 학생을 신문하기 전에,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NYPD 가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반드시 신문 전에 시니어 현장 자문이나 법무자문실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VI.B.1) 즉각적 위협이란 학생이 용의자이고, 용의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위급 상황이 적용될 때를 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NYPD/조사기관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만한 장애가 있는 장애학생을 학부모 부재 하에 신문할 경우, 반드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지명인이 함께 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VI.B.1.c, VI.B.2, VI.B.4)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VI.B.1.c)
- 학생 용의자란 표현을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로 고발된 학생이란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VI.B1.d 및 이하 전문)

- 미란다 원칙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VI.B.1.d, VI.B.2.d)
- SCI가 학생을 신문하기 원할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VI.B.4)
- NYPD 외의 기관이 직원을 신문하기 원할 경우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VI.C.1)
- 학교와 무관한 범죄 관련 신문은 학교 업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VI.B.2)
- 조사기관이 학교와 무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학교 업무시간 중 교직원을 신문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로 내세우는 긴급한 위험상황이나 지속적 위험 상황 주장에 대한 대처내용을 상세히 추가하였습니다. (VI.B.2)
-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에 관한 신고를 할 때 [교육감 규정 A-750](#)을 참조할 것을 명시하고, 본 규정에서 불충분한 세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VI.B.3)

섹션 VII

- 그 어떤 범죄관련 물품도 학교 소관으로 보관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모든 범죄관련 물품은 반드시 NYPD/SSA에서 압수하고 바우처링 후 관할구로 가져가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VII.A, B)
- 범죄 관련 물품은 아니지만 학교 커뮤니티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금지된 물품을 존중해서 다루는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학부모에게 연락, 학부모가 30 수업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VII.C)
- 휴대전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섹션 VIII

- 학생 기록에서 정보 제공 요청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A-820](#)를 참조하도록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VIII.A)



교육감 규정

번호: A-412

제목: 학교 내 안전

항목: 학생

발행: 2023년 12월 21일

요약

본 규정은 2006년 11월 8일자 규정 A-412를 폐지하고 대체합니다. 이것은 교직원의 학교 내 안전 및 보안 유지 책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것은 학교 관련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와 범죄 관련 물품을 압수하였을 경우 이것의 처리 프로토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I.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 유지

A. 일반 원칙 및 규정

1. 공립학교 학교 내 및 주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 표준을 충족하고, 교육자는 이러한 높은 표준을 목표로 학생을 지도하며, 학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한다고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감 규정 A-101](#)에 명시한 기타 의미를 뜻합니다.
2. 뉴욕시 교육청(DOE)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은 폭력, 무기, 약물 및 기타 학교 구성원들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에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성인과 학생들 간의 신뢰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가 형성되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열린 대화가 이루어지며,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3.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청 모든 학교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 학교 안전 요원(SSA) 및 뉴욕시 경찰청(NYPD) 학교 안전부(SSD) 모두가 협력하여 실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교 직원/교직원이란 용어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육청 교직 및 비-교직 직원을 칭합니다.

4. 본 규정은 학교 관련 사건 발생시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학교 관련 사건이란 교내에서 학교 일과시간 이전, 도중, 또는 방과 후 발생하는 건강 또는 안전상의 사건으로 규정하되, 교육청 예산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후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또는 학교와 연관된 학교 밖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학생, 교직원 및/또는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학교 관련 사건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 학교나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비-범죄 사건, 사고 및 의료 응급상황 등을 말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5. 학교장/대리인 및 교직원들은 학생 및 교육청 직원,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교육청 직원에 의한 비행이 있을 시, 반드시 필수 의무 통지, 신고 및 조사 절차, 이러한 절차의 타임프레임 및 아래에 명시된 적절한 후속조치 시행 의무 및 해당되는 교육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6. 본 규정에서 학부모 통지를 의무로 규정하였으나 학생이 학교장/대리인에게 학부모 통지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염려를 제기하였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및 안전상의 염려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이 내용을 통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7. 학교장은 전 직원이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종료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학교 안전 요원과 NYPD

1. SSA 는 학교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될 일원으로서, 교육청, NYPD 및 뉴욕시 간의 현행 [양해각서](#) 및 해당되는 [NYPD 순찰 가이드 절차 \(215-13, 215-17\)](#) 등에 의거하여 교육청의 교육 사명을 조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학교 안전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학교장 및 SSA 는 학교 보안, 면학 분위기 및 매일의 학교 운영에 있어 반드시 서로 자문을 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3. SSA 의 보안 역할에는 방문객 통제, 학교 건물 순찰, 비상 시 대응, 학생 몸수색 및 금속 탐지기 스캔 등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 밖의 요건과 정보 중 학생 몸수색에 관해서는 [교육감 규정 A-432](#) 과 교육청의 [학교 행동 규정](#) 을 참고하십시오.
4. 교육청 직원은 학생의 비-범죄성 비행에 대처하고 대응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절차에 방해가 되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예, 과도한 소란), 의무적인 교복 착용을 하지 않는 것, 임의로 수업에 빠지는 것, 학교나 수업 지각, 학교 무단 결석, 폭언이나 존중하지 않는 행위, 안전하지 못하거나

교육절차에 방해가 되는 의복, 모자 또는 기타 의류 착용, 전자 담배 흡연 및/또는 사용 및/또는 성냥이나ライター 소지, 도박, 학교 컴퓨터, 팩스 기계, 전화 및/또는 전자기구나 장비를 적절한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 거짓말, 거짓 정보를 주거나 학교 직원에게 잘못된 단서를 주는 것, 타인의 소유품을 잘못 사용하는 것 등.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범죄성의 사소한 학생 비행에 SSA 나 NYPD (학교 안전부 포함)을 불러서는 안됩니다. 해당될 경우 학교 직원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중재나 지원(예, 학생을 딘스 오피스로 데려가는 것)시 SSA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C. 빌딩 대응 팀

1. 각 학교 건물에는 반드시 빌딩 대응 팀(BRT)이 구성되어 학교나 캠퍼스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초대응팀이 오기 전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BRT의 최소 구성원으로는 BRT 리더, 이머전시 오피서, 사건 감정 담당자, 스페셜 니즈 코디네이터, 집합 장소 코디네이터 및 기록 담당자 등이 있습니다.
3. 해당될 경우, 각 건물에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후원하고 지역사회 기관(CBO)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방과 후 BRT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II. 응급 의료 지원을 요하는 학교 관련 사건

- A. 어떤 개인의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직원/SSA는 반드시 1) 즉시 911에 연락하여 EMS/소방대가 출동하게 하고, 2) 그 후 즉시 메인 오피스/메인 데스크 또는 기타 지정 연락처에 연락하여 훈련받은 보건전문가(예, 보건 보조교사, 간호사, 의사, NP, 또는 PA)가 현장에 있는 경우 올 수 있게 하고, 3) 그 다음 학교장/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 및 위기 완화에 관한 규정은 [교육감 규정 A-411](#)를, 자살 방지 및 적절한 911 사용방법은 [교육감 규정 A-755](#)를 참고하십시오.
- B. 학교장/대리인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가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가 학생일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장/대리인에게 학부모 통지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염려를 제기하였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및 안전상의 염려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이 내용을 통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C. 사고당한 사람의 즉각적인 의료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구급차 도착 전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 규정 A-701](#)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D. 의료지원이 필요한 개인이 학생이고 학부모가 자녀의 병원 후송을 원치 않는다 요청하였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911 대원들이 뉴욕시 소방국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학부모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의료 지원 거부(Refusal of Medical Assistance)를 승락한 뒤 학부모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 E. 의료지원이 필요한 개인이 학생이고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학부모가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병원 후송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911 대원들에게 있습니다.
- F. 현장 911 대원들이 학생의 병원 후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 중 한 명이 반드시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하거나, 또는 911 대원이 지시하였을 경우 학생을 따라가야 합니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III. 학교 관련 사건 보고 및 기록

혐의가 의심되는 범죄 및 비-범죄 사건, 이러한 사건에서 비롯된 부상 및 응급 의료 처치를 요하는 사건 등을 포함한 학교 관련 사건의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와 기록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건 발생 시 보고 및 기록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정보 출처 및 비밀 보장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및 비밀이 보장되는 정보에 관한 질문은 학교의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의뢰되어야 합니다. 학교 일과 시간 밖에 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들과 관련된 사건 보고 절차 정보는 [교육감 규정 D-180](#) 을 참고하십시오.

A. 교육청 응급 정보 센터(EIC)

1. 학교장/대리인은 학교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NYPD 에게 연락하였거나 NYPD 가 출동한 경우, 또는 공중 보건 및/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뉴스가 될만한 비-범죄 및/또는 의료 사고(예, 총기발사, 폭발 위협, 버스 사고, 자살 시도 등)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응급 정보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에서는 매 학년도 시작 전, 반드시 EIC 통보를 요하는 기타 유형의 학교 관련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 학교에 알려줄 것입니다.
2. EIC 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EIC 는 온라인 사건 발생 리포트(OORS 리포트)를 온라인 사건 발생 보고 시스템(OORS)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EIC 에서는 학교에 컨트롤 번호를 부여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수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반드시 OORS 리포트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학교장/대리인이 EIC 근무시간 외(즉, 학교 수업일인 주중 방과 후 시간 및 학교 휴무인 주말 및 공휴일)에 EIC 에 보고해야 할 학교 관련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이것을 즉시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보고하고 OSYD 에서 만든 템플릿을 이용하여 EIC 에 사건 관련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B. 온라인 사건 발생 보고 시스템(OORS)

1. 교육청 온라인 사건 발생 보고 시스템(OORS)은 모든 학교 관련 사고의 공식 보고 시스템입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지 수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모든 학교 관련 사건에 관한 리포트를 해당되는 사건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건에 관한 완전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포함되어야 하나, 징계조치에 관한 제안이나 시행에 관한 상세 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경우 반드시 필요에 따라 OORS 리포트를 업데이트 하여 새로이 입수된 사건 관련 정보가 수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사건 코드를 업데이트 하기 원할 경우, 반드시 osyddata@schools.nyc.gov 로 요청서를 보내어 고려되도록 합니다.
3. 조사의 일부로서 사건 당사자 및 기타 연루된 증인들을 반드시 면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증인 진술서는 반드시 OORS 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OORS 에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들에게 제공된 중재와 지원 내용, 그리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학생에게 취해진 모든 징계조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5. OORS 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정된 모든 사람은 OORS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IV. 학교 관련 사건 통지 요건

다음은 학생이나 교육청 직원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직원에 의해 자행된 범죄 및 비-범죄와 연관된 학교 관련 사건 발생 시 반드시 요구되는 통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정보 출처 및 비밀 보장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및 비밀이 보장되는 정보에 관한 질문은 학교의 시니어 현장 자문 또는 법무자문실에 의뢰되어야 합니다.

A. 부적절한 품행

1. 학생에 의한 범죄

- a. 학교 직원, SSA 또는 기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직원(예, CBO 직원, 청소부, 목격자 등)이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커뮤니티에 위협을 가할만한 학교 관련 범죄가 학생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 또는 혐의를 입수한 모든 경우, 반드시:
 - i.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ii.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NYPD 신고하고 이를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NYPD(이미 NYPD 에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와 SSA 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사건의 행위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불확실할 경우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c. 학교장/대리인은 혐의를 받는 학생 및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수퍼인텐던트 및 보안 안전 디렉터에게도 연락을 취합니다.
- d.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EIC 에도 연락하여 OORS 리포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 e. 학생 체포 관련 절차는 섹션 V 를 참고하십시오.

2. 비-범죄성 학생 비행

- a. 교직원들은 학교 관련 비-범죄성 학생 비행에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대응 및 대처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적절한 학급 관리 및 완화 테크닉 사용, 학교의 보고 체계 시행,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및 관련 교육감 규정과 교육청 정책에 의거하여 징계, 지원 및 중재. 어떤 경우에도, 비-범죄성 비행에 대한 징계적 대응 또는 징계 조치로 911 에 연락하거나 출동시켜서는 안됩니다.
- b. 학교 직원이나 SSA 가 징계 또는 기타 후속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학교 관련 비-범죄성 비행을 목격하거나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려 학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c.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섹션 III.B에 명시된 바와 같이 OORS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3. 학교장/대리인 및 교직원은 학교 차원의 징계나 후속 조치를 요하는 학생 위반행위, 학생 대 학생 성폭력,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행동 위기와 관련된 교육감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의무 통지 및 보고, 조사 절차를 계속해야 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한 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교육감 규정 [A-411](#), [A-443](#), [A-831](#), 및 [A-832](#) 를 참고 하십시오.

B.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직원의 비행

1. 교육청 학생이 연루된 범죄성 행위 및 성적 비행

a. 교육청 직원, NYPD 경찰관, SSA,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직원이 학교 직원이나 비-교육청 직원, 또는 학교 자원봉사자와 같이 학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 1) 학교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됨, 2) 교육청 학생을 상대로 교내, 또는 학교 밖에서 성적 비행을 저지른 경우, 이것이 범죄이건 아니건 간에 즉시:

- i. 학교장/대리인 및 수퍼인텐던트에게 통보합니다.
- ii. 혐의를 받는 비행이 범죄행위이고 해당 사건이 즉각적으로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일단 NYPD 에 신고하고 그 다음 학교장/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iii. 학생이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 iv. SCI 에 통보합니다. 통보 시 학교장/대리인은 아직 그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도 아니되며, 해당 사건을 조사해서도 안됩니다.

b. 학교장/대리인에게 반드시:

- i. 혐의를 받는 비행이 범죄일 경우 NYPD(위의 섹션 IV.B.1 에 명시된 바와 같이 NYPD 에 이미 신고한 경우 제외) 및 SSA 에 알립니다.
- ii. 학생이 연루된 경우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 iii. EIC 에 연락하여 OORS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2. 기타 위반 행위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교육청 직원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육청 직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교육감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필수 통지 요건, 보고 및 조사 절차, 이러한 절차의 시한 및 적절한 후속 조치 시행 요건 등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청 및 뉴욕시에서 정한 SCI 보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규정 A-420, A- 421, A -830 및 [뉴욕시 학교 학군 대상 조사- 스페셜 커미셔너\(nycsci.org\)](http://nycsci.org) 링크를 참고 하십시오.

V. 학생 체포

A. NYPD 경관 및 SSA 는 학생을 체포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범죄인 구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 최대한 학교장/대리인과 상의할 것이나, 즉각적인 위험으로 인하여 즉시 체포를 요하는 상황은 예외입니다. 해당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관할 경찰서 수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B. 해당 사건이 즉시 체포를 요하고, 체포 전의 자문이 불가능할 경우, NYPD 경찰관/SSA 는 반드시 학생 체포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C. NYPD 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학교와 무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학생을 학교 밖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NYPD 가 학교와 무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학생을 교내에서 체포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보로 안전 디렉터(BSD)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D.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이 체포될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수퍼인텐던트에게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E. 학생 체포 시에는 반드시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체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반드시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는 약간 사적인 공간에서 체포를 실시해야 합니다.
- F.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체포를 위해 출동한 NYPD 경찰관의 배지/ID 번호를 알아두고, 이를 OORS 리포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G. NYPD 규정에 의거하여 SSA 및 NYPD 경찰관은 반드시 학생 신변 확보 시 가능한 최소한의 제지를 하며, 12 세 미만 학생에게는 SSD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금속 수갑을 채울 수 없습니다. SSA 및 NYPD 경찰관은 학교장/대리인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신변 확보 전, 가능하면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볼 수 없는 사적인 공간으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 H.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부모가 도착하기 전에 NYPD 경찰관이 학생을 데리고 떠날 경우, 학교 직원(SSA 는 해당 안됨)이 반드시 관할서까지 학생을 동행해야 합니다. 학생 동행 요청이 거부될 경우, 학교 직원은 반드시 관할서로 즉시 가야 합니다. 관할서까지 학생과 동행하거나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체포를 야기시킨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어야 하며, SSA 이어서도 안됩니다. 학교 교직원은 적절한 시간 동안 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학생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 I. SSA 는 중죄, 경범죄 및 무기 관련 사건, 규제 약물, 갱단 관련 범죄 행위 등과 관련해 NYPD 학교 안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SA 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은 SSA 에게 사건에 대해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SSA 는 보고서 사본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학교 안전 운영 담당 센터(School Safety Division Operation Center)에 반드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VI. 학생 및 직원 신문

A. 일반적인 원칙:

1. NYPD, SCI, 아동복지국(ACS), 또는 기타 조사 당국에서 학생 및/또는 교직원을 신문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은 직원 및/또는 학생 신문 요청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학생이나 직원 신문이 허락되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B. 학생 신문

1. **학교 관련 범죄:** 학교 관련 범죄 혐의로 NYPD/기타 조사 기관이 학생 신문을 원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학생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a. 학부모와 연락이 되면 학교장/대리인 및/또는 NYPD/조사기관은 반드시 학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학생의 신문을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문에 동석하기 원할 경우, 부모 도착 전까지는 그 어떤 신문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거부할 경우, 신문이 실시될 수 없습니다.
 - b. 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NYPD/조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받는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신문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NYPD/조사기관에서 즉각적인 위험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나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법무자문실과 의논해야 합니다.
 - c. 교내에서 학생이 학부모 부재 중 NYPD/조사기관에 의해 신문받는 모든 경우에는 학교장/대리인이 반드시 신문에 동석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장/대리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학교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교직원이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이 때, 학생에게는 신문에 동석할 성인 교육청 직원을 선택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학생을 강제로 신문에 참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신문에 동석하는 직원은 학생을 도울 수 있고 학생이 편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생/부모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거나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통역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 d. 학생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고 신문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16 세 미만 학생 대상의 청소년 신문을 위한 미란다 원칙 및 16 세 이상 학생을 위한 미란다 원칙이 학교장/대리인 또는 학부모/보호자 입회 하에 낭독되어야 합니다.
2. **학교와 무관한 범죄:** NYPD/조사기관에서 학교와 무관한 범죄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을 교내에서 신문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러한 신문이 학교 일과시간 외에 시행될 것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a. 만일 NYPD/조사기관에서 긴급 상황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이나,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법무자문실에 연락하여 긴급상황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을 강제로 신문에 참여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b. 부모 없이 신문이 실시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신문에 동석해야 합니다. 이 때, 학생에게는 신문에 동석할 성인 교육청 직원을 선택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학생을 강제로 신문에 참여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말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신문에 동석하는 직원은 학생을 도울 수 있고 학생이 편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c. 학생이 범죄의 피의자임이 확실하고 신문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16세 미만 학생 대상의 청소년 신문을 위한 미란다 원칙 및 16세 이상 학생을 위한 미란다 원칙이 학교장/대리인 또는 학부모/보호자 입회 하에 낭독되어야 합니다.

3. 아동 폭력 및 학대:

- a. 아동 폭력이나 학대, 부모나 양육 책임자 또는 아동과 한 집에 자주 있는 사람에 의한 학대 혐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 규정 A-750](#) 을 참고하십시오.
- b. NYPD 나 ACS 에서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아동 학대 혐의에 관한 신문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를 허가해야 하며 이 때, 부모, 보호자, 후견인에게 절대 연락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 c. NYPD 나 ACS 가 같은 집에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학생을 상대로 질문할 경우, 학교장은 NYPD 나 ACS 와 논의하여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학교장 또는 아동이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이 학생이 달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담에 동석해야 합니다. 말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신문에 동석하는 직원은 학생을 도울 수 있고 학생이 편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정보는 [교육감 규정 A-750](#) 을 참고하십시오.

4. SCI 신문

- a. SCI 에서 학생 신문을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여 신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b. 신문이 허용되면 가능한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C. 직원 신문

1. 학교 관련 범죄: 학교 관련 범죄 혐의로 NYPD 가 교직원이나 비-교육청 직원의 교내 신문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비-교육청 직원의 답변을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NYPD 외 타 조사기관에서 교직원에 대한 신문요청을 해 올 경우, 학교장은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학교와 무관한 범죄: NYPD/조사기관이 학교와 무관한 범죄혐의로 교직원이나 비-교육청 직원의 교내 신문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러한 신문이 학교 일과시간 외에 이루어질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NYPD/조사기관에서 긴급 상황이거나 즉각적인 위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먼저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시니어 현장 자문에게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법무자문실과 의논해야 합니다.
3. 아동 폭력 및 학대: ACS 에서 아동 학대나 폭력과 관련하여 직원 신문을 요청할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75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학대 혐의가 학교에 의해 신고 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전직원이 신문에 협조해야 합니다.

VII. 범죄관련 물품 및 기타 금지 물품의 압수 및 바우처링(VOUCHERING)

- A. 학교 커뮤니티에 위험을 주는 범죄관련 물품이나 기타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통지 및 보고 절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본 규정에서는 말하는 범죄관련 물품(contraband)이란 법에 의해 금지된 것과 상관없이 교육청의 뉴욕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품행 기대치에 정의된 무기와 마리화나, 그리고 불법 약물을 의미합니다.
- B. 범죄관련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모든 범죄관련 물품은 반드시 NYPD/SSA 에 의해 압수되고 바우처링 되어야 하며 NYPD 에 의해 관할서로 옮겨져야 합니다. 범죄관련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즉각적으로 SSA 로 넘겨 바우처링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2. **그 어떤 경우에라도 범죄관련 물품이 교내에 남아있거나 직원이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NYPD/SSA 가 범죄관련 물품을 바우처링 하지 않거나 NYPD 가 이러한 물품을 치우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인 반드시 보로 안전 디렉터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NYPD/SSA 가 범죄관련 물품을 바우처링 할 때마다,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바우처 번호를 받고 이것을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OORS 리포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C. 다음은 범죄관련 물품은 아니나 금지된 품목을 학생이 소지하다 발각되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입니다(예, 베이핑 도구, 전자 담배, 주류, 가위, 손톱 다듬는 도구 등):
 1. 교직원, SSA 또는 NYPD 는 반드시 이러한 범죄관련 물품은 아니나 금지된 물품을 학교장/대리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2.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이러한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곳(예, 캐비닛,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부모에게 통지하여 부모 또는 부모가 지정한 기타 성인이 학교에 와서 이것을 찾아가게 해야 합니다.
 3.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물품을 처음에 소지했던 학생 본인이나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 또는 친척(나이불문)에게 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오직 부모나 부모가 지정한 적절한 성인에게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물품을 장기간 교내에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반복된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30 수업일 이후 이러한 물품을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5. 학교장/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필수 작성 OORS 리포트에 적어야 합니다: 학부모 연락 시도 및 시도 일자, 압수된 물품을 찾아가는 사람 성명, 압수 물품을 찾아가는 날짜, 압수 물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폐기일.
- D. 학교장/대리인은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죄연관/무관 물품을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 E. 금속 스캐닝(예, 금속 탐지기, 휴대용 수색기)을 사용하지 않는 NYPD/SSA 에 의한 학생 몸수색은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 있지 않은 한, 학생 및 사물함 수색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교육감 규정 A-432](#) 를 참고하십시오.

VIII. 학생 정보 공개

- A. 보건 및 안전 응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기록에서 나온 정보는 [교육감 규정 A-820](#) 에 의거하여 NYPD 와 SSA 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보나 기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시니어 현장 자문이나 법무 자문실에 연락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 B. 자녀가 연루된 사건에 관한 OORS 리포트 사본을 부모가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육감 규정 A -82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C. ACS, NYPD 또는 아동 학대 및/또는 폭력을 조사하는 기타 사법 기관에 기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750](#)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IX. 문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4220
 팩스: 212-374-5751